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9월 17일, 조계원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5년 9월 18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전체회의(2025. 11. 17.)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체육관광법안심사소위원회(2025. 12. 16.)

상정, 축조심사, 의결(원안가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 12. 19.)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조계원의원)

현행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해당 기본계획에는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

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그런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장애인 복지 확대 등 변화된 사회 환경을 고려할 때, 어린이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장애인과 노인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관리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음.

이에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대상을 장애인과 노인까지 확대함으로써 이들이 안심하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용규)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체육시설 이용 관련 장애인·노인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생략)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u>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u>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3의2. ----- <u>어린이</u>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 장애인 · 노인----- -----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계획임¹⁾. 문화체육관광부는 이에 따라 2021년 2월에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2021~2025)를 수립한 바 있으며, 규정에 따라 2026년에 2026~2030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 동 계획은 어린이 수영장 등 어린이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2023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계획에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음²⁾.
- 이와 유사하게 개정안은 우리나라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장애인 복지가 확대되는 추세를 고려하여 체육시설 이용 관련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공공체육시설 및 등록·신고체육시설에 한정한다. 이하 제4조의8까지 같다)의 안전한 이용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9598호, 2023.8.8. 일부개정

장애인과 노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려는 것임.

- 2025년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1,051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6년에 30%, 2050년에 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우리나라 총인구 및 고령자 인구 추이]

(단위: 천 명, %)

연도	총인구	65세 이상	비중 ¹⁾	노년부양비 ²⁾	노령화지수 ³⁾
2000	47,008	3,395	7.2	10.1	34.3
2010	49,554	5,366	10.8	14.8	67.2
2020	51,836	8,152	15.7	21.8	129.3
2025	51,685	10,514	20.3	29.3	199.9
2030	51,306	12,980	25.3	38.0	312.0
2035	50,825	15,208	29.9	47.7	406.7
2040	50,059	17,151	34.3	59.1	442.2
2050	47,107	18,908	40.1	77.3	504.0
2060	42,302	18,682	44.2	90.3	636.9
2072	36,222	17,271	47.7	104.2	726.8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주: 1) 비중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이 2010년 8.3%에서 2024년 35.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³⁾.

3)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10년 8.3%→'20년 24.2%→'24년 35.2%

- 장애인과 노인은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체육시설 이용 시 사고 위험이 더 크고, 안전사고 예방과 맞춤형 관리가 필요함. 따라서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것은 사회적 변화 추세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는 동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이를 통해 장애인 및 노인 계층에 대한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임. 다만, 노인, 장애인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한 시설, 장비 등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이는 민간체육시설업자의 경제적 부담 등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박정하)

조계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제3호의2 중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장애인·노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생 략)	제4조의2(체육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등 수립) ① (현 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체육시설 이용 관련 <u>어린</u> <u>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u> <u>다. 이하 같다)</u> 안전사고 예	3의2. ----- <u>어린</u> <u>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u> <u>다. 이하 같다)</u> · 장애인 · 노
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u>인</u> -----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